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1차 국가자격시험

[행정사 모의고사] (제1회 : 2020. 02. 26 시행)

정답 및 해설

민법(총칙)

1. 정답 ③

해설 [101]

③ 제1조

- ①⑤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 ④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2. 정답 ③

해설 [103]

- ②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81.7.7. 80다2064).

3. 정답 ④

해설 [104]

- ④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대판 2007.11.16. 2005다71659).

4. 정답 ①

해설 [104]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또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5. 정답 ⑤

해설 [104]

⑤ 1993.3.30.에 출생한 甲은 2012.3.29. 오후 12시 즉 2012.3.30. 오전 0시부터는 성년이 되므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6. 정답 ③

해설 [104]

③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7. 정답 ②

해설 [105]

② 제54조 제1항

① 이사는 모든 법인에서 필수기관이다.

③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59조 제1항).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법인의 특별대리인도 그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제41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여 유효한 경우에도 나아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8. 정답 ③

해설 [105]

③ 파산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사무를 처리한다.

9. 정답 ①

해설 [105]

①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9.11.26. 2009다57033). 이러한 결론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본 사례는 대표자 乙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丙은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비법인사단인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

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3.07.11. 2001다73626).

③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대판 2003.07.25. 2002다27088).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제276조 제1항),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07.22. 2002다64780)

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문처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채무보증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10. 정답 ③

해설 [106]

①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양도나 담보물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④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고 한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11. 정답 ③

해설 [109]

③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7다3285).

12. 정답 ④

해설 [109]

④ 공박, 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13. 정답 ③

해설 [109]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04.25. 99다34475).

14. 정답 ④

해설 [110]

④ 이 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15. 정답 ②

해설 [110]

- ①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제109조 제1항 단서).
-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 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판례).

16. 정답 ①

해설 [110]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17. 정답 ⑤

해설 [111]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18. 정답 ⑤

해설 [111]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15조 본문),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그로 인한 효과도 대리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 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

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03.25. 96다51271).

ㄷ.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ㄹ.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대리인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9. 정답 ②

해설 [112]

② 법정추인사유로서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만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행청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20. 정답 ②

해설 [114]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사례에서 甲은 2011년 3월 24일 24시에 성년이 되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2014년 3월 24일 24시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2020년 3월 24일 24시이다.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2014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1. 정답 ④

해설 [113]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22. 정답 ⑤

해설 [114]

기산점은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3월 1일이고, 만료점은 3월 31일 오후 12시이다.

23. 정답 ⑤

해설 [115]

- ① 오납시부터 진행한다.
- ② 개개의 진료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24. 정답 ②

해설 [116]

① 대판 2001.11.9. 2001다52568

②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83.0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③ 대판 2006.7.27. 2006다32781

④ 제178조 제2항

⑤ 제182조

25. 정답 ③

해설 [116]

① 제162조 제2항

② 제165조 제1항

③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④ 제184조 제2항

⑤ 대판 1987.6.23. 86다카2107

행정법

26. 정답 ④

[해설] 설문은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즉, ㉠은 ‘법률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자기구속’이다.

27. 정답 ②

[해설] 건설업 면허수첩 대여행위를 이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면허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건설업 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위시 법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8. 정답 ④

[해설] 특별권력관계는 「①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와 「②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29. 정답 ①

[해설]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30. 정답 ①

[해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4항).

31. 정답 ⑤

[해설] 다수설과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즉, 법규명령도 헌법재판소의 통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32. 정답 ④

[해설]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은 인가(강학상의 인가)에 해당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은 특허(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

33. 정답 ②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하는 행위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행위만이다.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4. 정답 ④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부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행위 효과의 제한을 직접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35.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관례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부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기한으로서 부담이 아니다.

② 틀림. 법령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여진 부관은 무효이다.

③ 틀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부관(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틀림. 최소침해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틀림. 부담을 붙이행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소멸사유가 아니다.

36.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간주가 아니라 추정된다.

③ 틀림. 상대방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고의 방법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④ 틀림.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틀림. 상대방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자나 사무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37. 정답 ④

[해설] ④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지만, 불가변력은 처분청이나 관계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①.②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확정력 발생사유일 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③ 불가쟁력은 형식적 확정력, 불가변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쟁송기간의 제한도 불가쟁력의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

38. 정답 ②

[해설] 관례상 하자승계가 부정된 사안은 ㉠.㉡.㉢이다.

39. 정답 ①

[해설] 해제조건의 성취는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한다.

40. 정답 ③

[해설] 관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41. 정답 ④

[해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정답 ①

[해설]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별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이 있다.

43. 정답 ④

[해설]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쟁송에 의한다.

44. 정답 ①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교통할아버지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45. 정답 ④

[해설]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의 원칙’이 아니라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46. 정답 ③

[해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관례이다.

47. 정답 ③

[해설] 국유일반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의 납입고지는 사법상의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48. 정답 ①

[해설] 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9. 정답 ②

[해설] 설문은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에 대한 내용이다.

50. 정답 ①

[해설] ② 민사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사소송. ⑤ 민사소송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51. 정답 ④

[해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음

52. 정답 ③

[해설]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임

53. 정답 ③

[해설]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는 신공공관리에 관한 내용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전문화된 기관으로의 분절화는 조정 및 통합의 문제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음

54. 정답 ②

[해설] 진보주의자의 정부관을 보면 많은 영역에서의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더 많은 정부지출과 규제를 선호함; 따라서 조세 감면과 완화는 보수주의에 관한 설명임

55. 정답 ④

[해설] 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둔감함; 즉, 고도의 분업화를 지향하는 기능구조는 부서 간 조정 및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

56. 정답 ④

[해설] 실체설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이익이 곧 공익이라는 관점임; 이는 과정(참여)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공익관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의 투입(과정)보다는 산출(결과)기능을 중시하는 학설임

57. 정답 ④

[해설]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임;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현대 행정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58. 정답 ③

[해설]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임; 나머지 선지는 전국적인 통일성, 그리고 국가의 존립 등을 위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에 해당함

59. 정답 ③

[해설] 내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임; 내적 타당성은 인과관계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결과가 오로지 한 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면 이는 내적인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60. 정답 ②

[해설] 직급에 관한 설명임; 직급은 직무의 종류(종적인 기준)와 난이도 및 책임성(횡적인 기준)이 유사한 직위의 군임

61. 정답 ③

[해설] 전통적으로 국회는 정부예산을 통제 감독한다고 인식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최근 예산 심의 실태를 보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가 있음

62. 정답 ②

[해설] 관료제는 집권적인 구조이므로 실질적인 재량권, 즉 의사결정권이 하위계층에 주어지지 않는 않음; 다만 문제에서는 상위계층이 하위 계층에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분권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주의할 것

63. 정답 ②

[해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에 의한 민관협력적 통치현상으로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정치적 과정(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

64. 정답 ③

[해설] 특별회계는 한정성(한계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임

65. 정답 ④

[해설] 공사의 구별과 법규·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게 되면 비정의성(법치행정)을 촉진함

66. 정답 ②

[해설]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것은 신행정학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임

67. 정답 ①

[해설] 비교행정론이나 생태론은 행위자 개인보다 조직이나 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이론임; 즉, 생태론이나 비교행정은 선진국의 행정체제가 후진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임

68. 정답 ①

[해설] 공익의 실체설은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동체나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함; 여기서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이란 사회 내 개인의 이익 및 견해 등을 의미함

69. 정답 ④

[해설]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수직적·수평적 분류체계 때문에 직무변화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없는 제도임

70. 정답 ②

[해설]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음; 반면에 정책공동체는 전문성을 가진 제한된 참여자를 특징으로 하며,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의 개방성이 낮음

71. 정답 ①

[해설] 인간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통제 내지는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라고 보는 입장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임

72. 정답 ④

[해설] ④는 유인가에 대한 설명임; 유인가(valence)는 '대상에 대한 선호의 정도'임; 수단성(instrumentality)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결과가 가져올 보상에 대한 기대를 의미함

73. 정답 ①

[해설]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부로 하여금 가장 작은 단위(인건비·물품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통제지향적인 제도임; 시험에서는 이를 회계책임이 명확한 제도라고 표현함

- ②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에 대한 설명임
- ③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임
- ④ 구성원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특징임
- ⑤ 계획예산제도 혹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임

74. 정답 ②

[해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수단으로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상호융통제도임; 따라서 국회의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함

75. 정답 ④

[해설] 번스(Burns)의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